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2009. 3.
개 정 2010. 6.
개 정 2011. 12.
개 정 2012. 10.
개 정 2012. 12.
개 정 2014. 3.
개 정 2015. 2.
개 정 2016. 2.
개 정 2016. 5.
개 정 2016. 8.
개 정 2020. 2.
개 정 2020. 3.
개 정 2020. 6.
개 정 2020. 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 제7장 등에 의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과정 구분) 교육과정의 이수구분은 학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교과목, 교직교과, 전공교과목(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교과목과 선택교과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03.11.)(개정2015.02.23.)

제2조의2(교육과정 편성의 의무) 학부(과)장은 다음 학년도 개시 전까지 신입학생에게 적용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6.02.01.)

제3조 (교육과정 편성 및 학점배정) ①교양교과목은 본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 목표, 학교 인재상에 부합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도록 구성하고,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편성하며, 교양과목에는 사회봉사과목을 포함한다.(개정2011.12.26.)(개정2016.02.01.)

②전공교과목은 본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 목표, 학교 인재상에 부합 하도록 전공별 학문적 경향, 산업수요 및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전공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하고 이를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편성한다.(개정2016.02.01.)

③동일교과목을 2학기 이상 개설할 때에는 이수순위를 1, 2, 3, 4로 표시한다.

④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교양선택 및 전공선택 교과목으로서 교육과정 운영상 개설이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편성·개설할 수 있다.(개정2011.12.26.)

⑤교육과정의 이수구분별 학점배점과 편성기준은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에서 교양은 30%이상, 전공은 70%이하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1.12.26.)(개정2020.02.06.)

⑥수업유형은 이론, 실습, 이론/실습(병행)으로 구분하고, 이론수업은 실습(실험·실습·실기 등)을 시행하지 않고 순수 이론 강의(원격강의포함) 만을 시행하는 수업을, 실습수업은 산업현장의 적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내·외에서 실습(실험·실습·실기 등)이 80%이상 진행되는 수업을, 이론/실습(병행)수업은

실습이 최소 40%이상의 수업을 말한다. 또한 수업유형의 구분은 매학기 교과목 개설시 학과에서 확정하여 시행 한다.

제4조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 ①학칙 제28조에 근거하여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따라 매학기 이수시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이론교과목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2. 실험실습 및 실기 교과목은 각 단과대학 및 전공의 특성에 따라 이론교과목 1시간에 해당하는 실습시간을 1~3시간으로 적정하게 편성한다.(개정2020.08.25.)
3. 현장실습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2016.05.30.)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 및 실습의 특성에 따라 현장실습 시간을 학점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실시 할 수 있다.(개정2011.12.26.)(개정2016.02.01.)(개정2016.05.30.)(개정2020.08.25.)
5. 간호학과 외부 실습 과목은 45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0.03.26.)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외부 실습을 교내 실습으로 대체하여 실시하는 경우 실습수업은 제2호에 따라 학점당 30시간으로 하되, 간호인증평가원 등에서 필요로 하는 실습인정 시간은 과제, 토론, 자유학습활동 등을 포함하여 학점당 45시간으로 한다.(신설 2020.06.16)

②자율학습, 타 학교 등의 학점인정, 특별평가 등의 학점단위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이수구분별 이수학점은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른다.(개정2015.02.23.)

④교양선택과 일반선택(소속학부 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으로서 부전공 및 복수전공으로 이수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은 매 학기 취득 한계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⑤재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특별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0.02.06.)

1. 인성 함양을 위한 단기 교양 교육과정
2. 전공능력 향상을 위한 심화 또는 융합 전공 교육과정
3.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관련 교육과정
4. 양질의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 맞춤형 교육과정
5.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집중 교육과정
6. 창업인력 양성을 위한 창업 지원 교육과정
7. 기타 교내·외 프로젝트 활동 등을 위한 과정 등 총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⑥자기개발학기 및 커리어학기에는 별도의 특별교육과정만 운영하거나, 정규교육과정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신설2016.08.29.)

제5조 (현장실습 및 실습학기) ①재학 중 3학년 과정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기간 중에 현장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②학생의 현장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③현장실습 및 실습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조 (졸업과제 연구) ①학과에 따라 3~4학년 교육과정에 졸업과제연구를 부과할 수 있다.

②졸업과제연구에 관한 세부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조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등)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기취득한 학점에 대한 인정과 편입학 후의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8조 (교육과정 적용) ①신입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편입학 및 재입학, 전입학, 복학생은 그 당해

학년도의 동일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②복학생이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하여 수강할 교과목이 기 수강교과목과 중복될 경우 복학 당해 학년도의 교육과정 중 저학년에 편성된 교과목이나 일반선택을 수강하여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③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학생은 개편된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2016.02.01.)

제9조 (교육과정 개편) ①교육과정의 개편이라 함은 교과목명의 변경, 교과목의 폐지, 신규교과목의 추가, 학점 및 시수의 변경, 학생의 개편 요구 등에 의하여 전년도 교육과정 대비 혹은 당해 연도 교육과정의 일부 혹은 전체 과정의 변경을 말한다.

②교양 교육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양교육원장은 관련 교수, 학생 등 교내구성원 및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교양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개편안을 수립한다.

③전공 교육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학부(과)장은 소속 학부(과) 교수, 학생 등 교내 구성원 및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학과 단위의 개편안을 수립하고, 단과대학단위의 검토를 실시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수립된 개편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 한다.(개정 2020.02.06.)

제10조 (개설 교과목 확정) 학기별 개설 교과목은 학년별로 각각 적용되는 해당년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에 한하며, 각 학부(과)장은 교육과정에 의한 학년별 개설 교과목을 학기별로 지정된 기한 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의 정책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의 승인하에 개설교과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학점의 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12조 (교과이수 등) 졸업 및 이수에 관한 학점취득이나 편입학·재입학·전입학·복학 등의 교과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 (기타사항)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3.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